

감정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임정주 공정계약연구원 대표, jungjooim73@gmail.com

1. 서론

최근 건설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인의 역할과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 반면에 감정인의 전문성, 중립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즉 감정인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감정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어느 한 계약당사자에게 감정결과가 편파적으로 도출됨에 따라 소송관계인들의 불만과 우려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감정제도와 한국의 감정제도와 비교, 검토를 통하여 감정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는데, Civil Law 체계(한국, 일

본, 프랑스)가 적용되는 3개국과 Common Law 체계(미국, 영국, 싱가포르)가 적용되는 3개국이 검토되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감정절차에 따라 감정인 자격 및 요구사항, 감정인 선정방법, 감정인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감정인 제재로 구분하여 제도개선 방향이 검토되었다.

2. 감정인 자격 및 요구사항

2.1. 각국의 운영현황

Civil Law 체계가 적용되는 3개국은 민사소송법을 기초로 감정인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격 및 경험을 중요한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자격증(건축사, 기술사)을 중요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결격사유(과거 실적, 고령 등)가 있지 않는 한,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Common Law 체계가 적용되는 3개국은 전문성 및 중립성(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중재협회 등 여러 유관기관의 자격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검증기준(전문성, 중립성, 유관기관 추천 등)을 적용하고 있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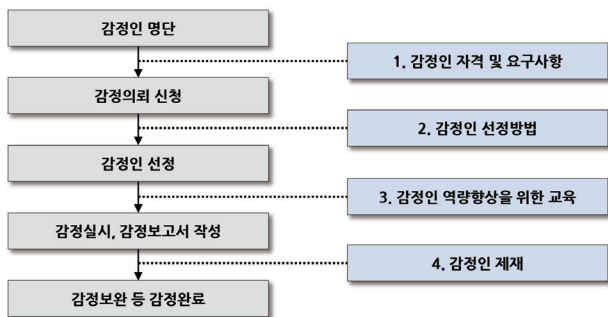


그림 1. 제도개선 방향 검토항목

표 1. 각국의 감정인 자격 및 요구사항

항목	Civil Law			Common Law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	싱가포르
자격 및 요구사항	공사비 등의 감정인 •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속단체가 추천한 사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사람	• 감정위원 (관련 기관 (JCAA) 등의 추천) • 기술적 능력 및 경험 필요 • 전문자격증 (건축사, 기술사)	•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학력과 경력 (관련 학위와 최소 10년 이상의 실무경험) • 자격심사위원회 • 도덕적 신뢰성	• 전문성, 신뢰성, 독립성, 실적 (Daubert 기준 적용) • PE, PMP, CCM 등 공인 자격증	• 전문성 및 중립성을 엄격히 평가 • RICS, ICE, CIARB 등에서 인증 받은 전문가	• 실무경험, 학력, 과거실적 평가 • PE 등의 건설관련 자격증 보유 • SIARB에서 전문교육을 이수

2.2. 제도 개선 방향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감정인 등록/관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검증기준(전문성, 중립성, 유관기관 추천)이 적용되고, 자격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전문성을 보유한 감정인 등록이 필요할 것이다. 등록된 감정인은 주기적 심사, 교육, 실적평가를 통해서 감정인 역량을 유지하고, 감정인에 대한 평가를 Feedback해서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감정인 Pool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법원감정인은 안전진단, 하자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 분쟁이 다양화되어가는 추세에 따라 추가공사대금, 공사기간의 연장, 지체상금 등의 분야에 감정인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대한상사중재원, 한국기술사회, 대한건축학회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교육, 세미나 등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감정인 자격/전문성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감정인 배치를 통하여 수준 높은 감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감정인 선정방법

3.1. 각국의 운영현황

Civil Law 체계가 적용되는 3개국은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Common Law 체계가 적용되는 국가 중, 미국은 양측 당사자가 감정인을 지정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나, 영국과 싱가포르의 2가지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한국은 법원이 주도적으로 단일한 감정인(다수의 감정인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감정내용은 구분된다)을 선정하기 때문에 감정인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어느 한 당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영미권은 양측 당사자가 감정인을 각각 지정하고, 복수의 감정인이 감정인 회의, 공동진술서 등의 감정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쟁점이 단순화되고 재판부의 업무가 감소됨

표 2. 각국의 감정인 선정방법

항목	Civil Law			Common Law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	싱가포르
감정인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 당사자간 합의로 공동 선정하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이 감정위원을 지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 관련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법원감정인 명단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 당사자가 감정인을 지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 법원의 지정 (드문 형태로 존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 당사자가 감정인을 지정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됨 • 법원이 CPR 35조에 따라 Single Joint Expert를 지정하기도 함 • 전문기관 추천 (RICS, 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 당사자가 감정인을 지정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됨 • 필요시 법원이 중립적인 감정인을 지정

로써, 양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감정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3.2. 제도 개선 방향

감정인 선정방법의 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감정인의 중립성/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감정인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정인이 독립성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감정 형태를 적용해서(예를 들면 공동감정 형태) 감정인 간 부분적인 합의를 통하여 쟁점을 단순화하면 재판부의 업무가 감소되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 가능하게 되고 소송관계인이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감정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감정 과정(감정인 회의 및 공동진술서 작성)을 통하여 유능한 감정인이 자연스럽게 식별됨으로써 감정인 역량향상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정실적에 대한 평가 및 감정인 Feedback을 통하여 객관적 기준을 구축해서 적절한 감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정과정에서는 감정준비명령(감정대상, 감정기준, 감정자료)과 같이 감정절차를 구체화하여 감정인에 대한 지도/관리/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감정인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4.1. 각국의 운영현황

해외의 경우 학회, 중재기관, 협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감정인과 관련된 여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안전진단 관련 교육은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감정인을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은 한국건설법무학회에서 진행하는 건설감정사 교육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4.2. 제도 개선 방향

현재 감정인은 법원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법원에서 감

표 3. 각국의 감정교육

항목	Civil Law			Common Law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	싱가포르
역량향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건설법무학회 (건설감정사 교육) 건설기술교육원 (안전진단 등) 한국기술사회 (감정 교육) 법원 (감정인 위촉 교육, 실무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건축학회, 일본토목학회에서 감정기법 및 사례 제공 일본건축구조기술자 협회 (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CEJ, ENPC, CESTI 등에서 엔지니어링 분야, 안전진단 등의 교육 재인증 필요 (법정 감정인 등록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FE, ASCE, AIA 등에서 법공학, 교육, 세미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RICS, ICE에서 감정인 인증 프로그램 Clarb는 감정인을 위한 전문 훈련 제공 감정인 네트워크 운영 CIOB는 감정인 양성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SIAC, SICC에서 감정인 교육과정 운영 SISV, SIMC, SI Arb, BCA Academy, IES, Law Society of Singapore에서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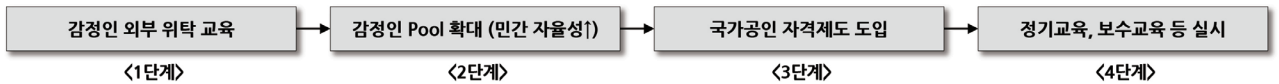


그림 2. 감정인 교육 추진단계

정인 교육까지 주도적으로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법원 외부 (대한상사중재원, 각종 학회, 협회 등)에 위탁교육을 의뢰해서, 능력 있는 감정인 Pool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지원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감정인을 유지하고, 정기교육 및 보수교육을 통하여 감정인의 역량을 유지/향상해야 할 것이다.

감정인의 역량향상을 위해서 법원, 정부, 감정인의 역할이 중요한데, 법원은 감정인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위탁교육을 검토하고, 정부는 예산 확보, 유관부서 간 업무 조정, 분쟁조정기관의 역할 검토가 필요하며, 감정인은 해외자격/해외사례를 참고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

5. 감정인 제재

5.1. 각국의 운영현황

조사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정이 부실한 경우, 증거배제, 법적징계, 형사책임 등의 제재조항이 있다.

표 4. 각국의 감정인 제재

항목	Civil Law			Common Law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	싱가포르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거배제 (객관적이지 않으면 증거 불인정) 비용을 감정인에게 전가 형사 책임 (위증죄, 감정인 자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거 불채택 법적 징계 (법원이 벌금 부과, 자격 제한) 형사 책임 (위증죄 등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거배제 법적징계 (감정인 제외) 형사처벌 (위증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ubert Motion 제기 (감정인의 증언 또는 보고서 배제) 민사 책임 (당사자 또는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 관련 자격증 기관으로부터 징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거 배제 (의견이 편향적이면 배제) 비용 청구 배제 (감정비용 회수) 형사 책임 (위증죄 등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거 배제 (의견이 신뢰할 수 없다면 배제) 비용 처벌 (감정비용 청구 불인정) 형사 책임 (위증죄 등 처벌)

5.2. 제도 개선 방향

국내의 감정절차는 소위 '사후감정식'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즉 감정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검토/확인 과정 없이 감정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감정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36조를 고려하였을 때,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감정인을 기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결과가 불합리한 경우,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사후감정식 감정절차 대신, 감정 개시, 준비, 감정활동의 절차시에 적절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감정인의 중립성, 공정성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통하여 감정인이 엄격하고 중립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맺음말

해외 건설시장은 건설분쟁과 관련된 원칙/판례가 오랜 시간 동안 확립되어 왔기 때문에 국내 건설분쟁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편이다. 국내에 아직 정립되지 않은 원칙/판례가 있다면, 해외자료를 활용해서 소송관계자들의 불만과 우려를 줄이고, 국내의 상황에 맞춰서 기준 및 원칙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수준 높은 감

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 건설시장은 국내보다 다양한(세부적인) 분야의 전문가가 활동하면서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건설분쟁에 적용이 가능한 상황(해외 발주자, 준거법, 전문분야)이라면, 해외전문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건설분쟁의 특성 상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감정결과의 신뢰 저하, 소송관계인들의 불만 증가 등의 상황은 결국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현 감정제도를 조속히 개선/보완해서 건설분쟁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